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4년 5월 31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 라. 상정일자: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4.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욱준)

- 가.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 자치법규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국가유산 체제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24.5.17. 시행됨에 따라 사용하던 명칭을 “향토문화재”에서 “향토유산”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및 관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과 조례 전체에서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함.

- 조례 전체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함.
- 안 별지 제1호서식을 신설하고, 현행 별지 제1호서식을 제1호의2서식으로 변경하여 향토유산 지정에 관한 처리 과정을 체계화함.

○ 검토 결과

- 동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 소재 향토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고자 2012년 12월 27일 제정된 바 있으나, 이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된 향토문화재 현황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임.
- 본 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용어인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참고한 것으로, 여기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분류되어있음. 그러나 문화재의 “재(財)”는 재물 및 재산의 뜻으로 무형문화재 및 자연물 등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이를 모두 포함하면서 현재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이 제정 및 시행되었음('24.5.17.). 이를 참고하여 본 일부개정안은 제명과 조례 전체에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별지1을 추가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향토유산 지정 과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향후 우리 구(區) 향토유산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여겨짐.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53 호
----------	---------

제출연월일: 2024.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 자치법규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국가유산 체제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명칭 변경
- 나.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제명 개정 및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2조)
- 다. 향토유산 지정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3)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가능성 있음

- 상기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변경전) 보좌 → (변경후) 도와 일을 처리

(변경전) 심신쇠약 → (변경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라. 입법예고(2024. 4. 25.~5. 16./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향토문화재를”을 “향토유산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재(이하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향토문화재 발굴·보존 기본계획 수립)”을 “(향토유산 발굴·보존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4조 중 “향토문화재의”를 “향토유산의”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이하”를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로 한다.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향토문화재”를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좌하며”를 “도와 일을 처리하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

외체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를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하고,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한다.

제12조제1항 중 “향토문화재로”를 “향토유산으로”로, “향토문화재의”를 “향토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향토문화재는”을 “향토유산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재를”을 “향토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를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향토문화재와”를 “향토유산과”로 한다.

제15조 중 “향토문화재를”을 “향토유산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향토문화재”를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향토문

화재를”을 “향토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전의 별지 제1호서식) 중 “향토문화재”를 각각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를”을 “위 대상을”로, 같은 서식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명”을 “유산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 중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 구역안”을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를”을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무형유산”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뒷면)

향토유산 현황(사진)

제3조(향토문화재 발굴·보존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재 발굴·보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재의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3조(향토유산 발굴·보존 기본계획 수립) -----

--- 향토유산 -----

-----.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유산의 -----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
-----.

제5조(심의사항) -----
-----.

1. (현행과 같음)
2. 향토유산-----
3. 향토유산-----

4. 향토유산-----

5. ----- 향토유산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재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제11조(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유산 -----
-----.

⑤ -----
----- 국가유산 -----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와 일
을 처리하며-----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해촉) -----

-----.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체류 -----

--

2. (현행과 같음)

제11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

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지정·해제의 고시 및 통지)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

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하고,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한다.

③ ----- 향토유산-----

-----.

제12조(지정·해제의 고시 및 통지) ① ----- 향토유산으로 -----

----- 향토유산의 -----
-----.

② ----- 향토유산-----

-----.

제13조(관리자 지정) ① -----
----- 향토유산-----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재는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4조(보존관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영등포구회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매수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문화재 전

-----.

② ----- 향토유산은 -----

-----.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

-----.

1. 향토유산-----

-----.
2. -----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

-----.
3. 향토유산과 -----

-----.

제15조(관리점검) ----- 향토유산을 -----

-----.

제16조(기록보존) ① ----- 향토유산-----
-----.

② ----- 국가유산 -----

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발굴,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향토문화재 등의 관리·보호·수리·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한다.

제18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향토문화재의 멸실, 유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향토문화재를 관리, 보호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에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3. 향토문화재 발굴·보존·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제17조(지원 등) ① ----- 향토유산-----

-----.

② -----
----- 향토유산-----

-----.

제18조(표창) -----

-----.

1. -----
----- 향토유산-----

2. 향토유산을 -----

3. 향토유산 -----
